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상체제 도입의 효과적 추진방안

박 광 호

부경대 대학원

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상체제 도입의 효과적 추진방안

박 광 호

<목차>

Ⅰ. 서론
Ⅱ. 수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
1. 유통환경과 소비자 수요 여건의 변화
2. 수산물 수입품의 대량화와 다양화
Ⅲ. 도매상체제 도입의 경과
1. 농안법의 제정과 도매시장거래원칙
2. 농안법 파동과 상장예외품목지정
3. 농안법 개정과 시장도매인제도입
Ⅳ. 도매상 체제의 논점과 비판
1. 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한 경매의 적합성
2. 도매상제에 따른 수산물의 투기 또는 독과점 가능성
Ⅴ. 도매상체제의 효과적 추진 방안
1. 제 1단계 : 상자예외품목의 점진적 확대
2. 제 2단계 : 업무규정의 현실적 적합성
3. 제 3단계 : 거래의 공정성 기반구축
Ⅵ.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과거부터 수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제도를 권장하였고 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도매시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농안법 이 개정되었다. (1999. 12. 16 개정 농안법 제22조, 지방도매시장 2000. 6. 1 / 중앙도매시장 2004. 1. 1)

이러한 시장도매인제가 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매시장에도 도매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도매상체제를 도입하기까지에는 관계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왜냐하면 농안법이 제정된 이래 상장경매제도가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행도 해보지 않고 새로운 거래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위탁상에 의한 폐해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었다.

그러나 유통구조 개혁의 일부로서 도매상체제가 도입되어 2001년 6월부터 지방도매시장부터 도매상체제가 실시하도록 되었으나 2003년 현재 지방도매시장의 한곳도 도매상제를 실시하는 곳이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중도매인 에 의한 수탁 과 법인에 의한 기록상장의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004년이 되면 중앙도매시장도 도매상체제가 원할하게 도입될 수 있을런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법까지 개정하면서 도입한 도매상체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도매상체제에서의 도매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되살펴보고 도매상체제가 도매시장에서 유통구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념적 논의의 기초가 되어지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실질적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Ⅱ. 수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

수산물은 산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산물은 일반 공산품이나 농산물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부패 및 변질이 빠르며, 저장 및 수송의 곤란성, 원가 산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불안정하여 가격 형성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유통 경로 또한 복잡하여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중도매인 → 산지유통인(주재하주) →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 직판상인(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외에도 산지와 소비지까지 운송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서 판매원가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상의 제반 여건은 수산물 자체가 안고 있는 위험부담(Risk taking)에서 오는 특성과 수산물 종사자의 규모의 영세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1>

<표1> 유통단계별 판매금액 및 비율 (단위 : 원, %)

구 분			김	간미역	마른 오징어	마른 멸치	고등어	갈치	냉동 오징어	활붕 장어
생산자	어가 수취	금액	2,433	320.0	8,348	28,772	2,874	35,948	16,061	3,400
		비율	64.0	19.2	41.7	68.5	28.6	44.1	57.4	48.6
	판매가	금액	2,550	320.0	8,696	30,000	2,874	35,948	16,061	3,400
		비율	67.1	19.2	43.5	71.4	28.6	44.1	57.4	48.6
산지중도인	판매가	금액	2,660	-	9,131	31,350	3,800	39,000	19,400	3,600
		비율	70.0	-	45.7	74.6	37.8	47.8	69.3	51.4
가공업자	판매가	금액	-	700.0	11,400	-	-	-	-	-
		비율	-	42.0	57.0	-	-	-	-	-
도매상	판매가	금액	2,800	750.0	12,000	34,000	4,200	42,000	20,600	4,500
		비율	73.3	45.0	60.0	81.0	41.8	51.5	73.6	64.3
중간도매상	판매가	금액	2,946	857.1	13,000	35,000	5,000	45,000	21,220	5,500
		비율	77.5	51.4	65.0	83.3	49.8	55.1	75.8	78.6
소매상	판매가	금액	3,800	1,667	20,000	42,000	10,050	81,600	28,000	7,000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김 : 속당 가격(중품), 간 미역 : Kg당 가격(중품), 마른 멸치 :3Kg가격(중멸),
마른 오징어 : 20(연근해산 1.4Kg중품), 고등어 : 30미/상자, 갈치 : 55미/상자,
냉동 오징어 : 20미/ 팬, 활붕 장어 : Kg당 가격
자료 : 농수산물유통, 공사, 농수산물 유통실태, 1993, P85-86

1. 유통 환경과 소비자 수요 여건의 변화

우리 나라의 유통시장은 1997년부터 완전 개방되면서 신 유통업태를 중심으로 다국적 외국 유통업체가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하였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까지고 유통 시장에 가세하여 경쟁하고 있다. <표2>

신업태 종류에는 할인점, 하이퍼마켓, 슈퍼센타, 회원제클럽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신업태 의 특성은 매장 면적과 거래량의 대규모화, 중저가 판매전략, 거래품목의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신유통 업태의 수산물 구매 형태를 보면 점포의 다 점포화가 진행될수록 산지로부터 직접구입을 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려하고 있다. 이들 신유통 업체가 등장하면서 도매시장의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는 영향이 있다. 이들 신유통 업체는 산지 직거래를 추구하면서 우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냉장 설비를 선진국 수준의 최신 설비를 갖추고,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부류별 포장과 청결을 가미한 상품의 고급화를 이룩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표2> 우리 나라 수산물 취급 주요 신유통업태 현황

구분	업체명	점포명	점포수	점포수 증설 계획
국내기업	신세계백화점	E마트	18	32개
	뉴코아백화점	킴스클럽	23	60개
	LG상사	LG마트	3	
	그랜드백화점	그랜드마트	4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4	
	한화유통	한화마트	2	
	농심가	메가마트	2	
	롯데백화점	마그넷	8	22개
	삼성물산	홈플러스	1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3	
	서원유통	탑스토아	8	
외국기업	한국까르프	까르프	11	20개
	한국월마트	월마트	5	10개
	코스코코리아	코스트코홀세일	3	
	테스코 (삼성물산합작)	홈플러스	2	

자료 : 전창곤,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농촌경제』. 제 22권, 제 4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99, p. 81

이와 같이 신 유통업태의 적극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비하여 도매시장도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 거래제도의 개선 등 획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수산물 수입품의 대량화 와 다양화

수입개방화로 수입수산물의 도매시장 반입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 추세인 바 이 와 같이 국내도매시장에 수입품이 증가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기타 국가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인한 연근해 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연안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며,

둘째, 국내산 수산물 가격보다 수입품의 가격이 현저히 싸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기타 동남아 국가의 수산물이 저가 공세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었으며, <표3>

셋째, 수입품의 상품형태가 냉동·냉장으로 되어 있어 장기간 보관 및 원거리 수송이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예 : 냉동, 통조림, 건어) 소비자 욕구에 맞도록 적합하게 되어있다.

<표3> 외국산 농수축산물 거래 현황

◎ 연도별 거래 실적

구 분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총거래량 (A)	국내산	수입산(B)	B/A (%)	총거래금액 (A)	국내산	수입산(B)	B/A (%)
'93	계	682,014	605,108	76,906	11	1,019,163	835,423	183,740	18
	청 과	458,009	407,595	50,414	11	427,939	385,680	42,259	10
	수 산	190,950	184,381	6,569	3	358,090	348,338	9,752	3
	축 산	33,055	13,132	19,923	60	233,134	101,405	131,729	56
'94	계	2,285,296	2,171,902	113,394	5	2,259,401	1,991,387	268,014	12
	청 과	1,994,678	1,922,588	72,090	4	1,424,058	1,362,998	61,060	4
	수 산	187,156	177,866	9,290	5	392,219	376,293	15,926	4
	축 산	106,462	71,448	32,014	31	443,124	252,096	191,028	43
'95	계	2,537,463	2,454,495	82,968	3	2,317,929	2,100,904	217,025	9
	청 과	2,242,006	2,198,812	43,194	2	1,484,582	1,433,378	51,204	3
	수 산	192,624	183,809	8,815	5	410,664	396,253	14,411	4
	축 산	102,833	71,874	30,959	30	422,683	271,273	151,410	36
'96	계	2,532,281	2,441,130	91,151	4	2,585,902	2,348,704	237,198	9
	청 과	2,239,484	2,186,549	52,935	2	1,738,673	1,673,424	65,249	4
	수 산	184,954	174,785	10,169	5	395,509	376,295	19,241	5
	축 산	107,843	79,796	28,047	26	451,720	298,985	152,735	34
'97	계	2,482,651	2,399,032	83,618	3	2,597,150	2,395,328	201,822	8
	청 과	2,199,102	2,147,114	51,988	2	1,812,481	1,735,639	76,842	4
	수 산	183,514	169,298	14,216	8	377,895	349,988	27,907	8
	축 산	100,035	82,621	17,414	17	406,774	309,701	97,073	23
'98	계	2,324,534	2,272,578	51,955	2.2	2,456,288	2,335,543	120,745	4.9
	청 과	2,069,519	2,037,006	32,512	1.6	1,725,152	1,667,126	58,026	3.4
	수 산	163,489	149,491	13,998	8.6	358,454	323,752	34,702	9.7
	축 산	91,526	86,081	5,445	5.9	372,682	344,665	28,017	7.5
'99	계	2,370,181	2,298,293	71,888	3.0	2,643,249	2,483,062	160,187	6.1
	청 과	2,134,035	2,090,599	43,436	2.0	1,855,836	1,796,813	59,023	3.2
	수 산	148,287	129,266	19,021	12.8	347,596	302,715	44,881	12.9
	축 산	87,859	78,428	9,431	10.7	439,817	383,534	56,283	12.8
2000	계	2,503,021	2,414,790	88,231	3.5	2,649,535	2,491,057	158,478	6.0
	청 과	2,267,758	2,211,757	56,001	2.5	1,880,785	1,811,688	69,097	3.7
	수 산	148,491	121,240	27,251	18.4	365,375	301,320	64,055	17.5
	축 산	86,772	81,793	4,979	5.7	403,375	378,049	25,326	6.3
2001	계	2,437,413	2,356,922	80,491	3.3	2,727,888	2,574,542	153,346	5.6
	청 과	2,209,580	2,157,319	52,261	2.4	1,926,316	1,847,022	79,294	4.1
	수 산	146,032	119,272	26,760	18.3	408,674	342,075	66,599	16.3
	축 산	81,801	80,331	1,470	1.8	392,898	385,445	7,453	1.9
2002	계	2,380,058	2,285,358	94,700	4.0	2,878,885	2,709,034	169,851	5.9
	청 과	2,168,601	2,099,894	68,707	3.2	2,050,450	1,950,666	99,784	4.9
	축 산	127,044	101,218	25,826	20.3	390,939	321,927	69,012	17.7
	수 산	81,413	84,246	167	0.2	437,496	436,441	1,055	0.2

자료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2003년 통계자료집, 2003. 3, p151

Ⅲ. 도매상 체제 도입의 경과

1.농안법의 제정과 도매시장 거래 원칙

해방이후에 일제시대 때부터 적용하여 오던 중앙도매시장법 (1951-1972)과 농수산물 도매시장법(1973-1976)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도매시장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였거니와 관리체제 역시 불충분하여 과거의 상거래 관행대로 위탁도매상으로 일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거래의 특명성이 미흡하고 불법 위탁상인의 난립으로 하여 도매시장다운 면모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표4>

<표4> 서울시의 인구변화와 도매시장제도의 변천

연도	서울 인구(명)	법 률	비 고	
1915	241,085	일제 시장규칙	☆철저한 경제심발을 위한 법적 장치	
1945	901,371			
1951	618,432	중앙도매시장법	☆소관 부처, 상공부 ☆1도시 1시장(법인)제도 ☆무지에 의한 무관심, 무정책시대	
1955	1,574,868			
1960	2,445,402			
1965	3,470,880			
1970	5,433,198			
1972	6,076,143			
1973	6,289,55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도매업무에 대한 개념 혼란기 ☆전품목 상장경매 지향	☆위욕적인 정책수립 ☆공영도매시장 건설 추진
1975	6,889,502			☆법 무시한 시장 개장과 혼란 ☆지도 감독 부재
1976	7,254,958			
1977	7,525,62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장예외품목제에의한 위탁상제로의 방향 전환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전품목 위탁상제 지향	
1980	8,364,379			
1985	9,639,110			
1990	10,612,577			
1995	10,595,943			
2000	10,373,234			

※서울시 인구는 서울시통계연감에 의함.

이 와 같이 농수산물 유통관련 법이 유명무실했고, 제도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도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다가 1976년 12월31일자로 종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을 폐기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 법)이 법률 제 2962로 호 제정 공포되었다.

농안 법의 제정과 함께 서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부터 도매시장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현대식 종합도매 시장 건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와 같이 건

설된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목적과 시장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원칙을 두고 준수토록 하였다.[1)]

첫째, 수탁주체 는 도매시장 법인이 되고 분산주체는 중도매인 이된다.

둘째, 거래방법은 경매입찰의 방법으로 하여 경매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 에게 판매케 하여 생산자에게 제값을 받도록한다.

셋째, 수탁판매의 원칙으로 모든 출하자의 물건은 법인만이 수탁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원칙을 두고 정부는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니 법인의 수탁능력부족과, 경매 추진 의지 부족으로 과거의 관행대로 중도매인에 의한 수탁행위가 계속되었다.

2. 농안법 파동과 상장예외품목지정

이와같이 개설자의 관리 감독의 불철저와 시장거래 관행이 계속되자 농안 법을 강제로라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농안 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이 결과 중도매인의 수탁 ·수집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도매인의 판매 방법을 오로지 중개에만 한정하고 도매 행위는 금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자 이에 중도매인들은 도매금지의 비현실성을 이유로 일체의 경매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이것이 소위 5.3농안 법 파동(1999. 5. 3)이다.

농안 법 파동이후 농 ·수 ·축 협의 생산자 대표, 소비자 단체대표, 학계, 공무원 등 34명을 참여시킨 『농수산물 유통 발전위원회』 와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는『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이들『농수산물 유통 발전위원회』와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은 쟁점 사항이 된 중도매인의 도매금지, 전 품목 상장 경매, 경매사 공영제, 시장관리 ·운영의 일원화 문제 등에 대하여 6개월 여에 걸쳐 현장시찰, 연구활동,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 국회토론을 거쳐 1994년 11월 농안 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1) 왕성우, "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과 발전방안", 2002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식품유통학회, 2002.p37

2) 왕성우, 전게논문, p40

1994년 개정 농안 법의 주요 내용
1. 중도매인의 도매거래 원칙, 예외적으로 중개 2. 경매가 불가능한 특수 소량품 에 대한 상장예외 품목허용 3. 경매사는 법인간의 선의의 경쟁, 생산자 수탁가격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소속으로 한다. 4. 시장 관리는관리소 또는 관리공사가 맡고 운영은 도매시장 법인이 담당토록 하여 관리 ·운영의 전문화 ·효율화를 추구한다.

이 와 같이 8차 농안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법인의 수탁능력 부족으로 인한 중도매인의 수탁행위는 여전하였고 경매거래 방법 또한 일부 활어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 방법에 대한 거래제도 개선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었으며,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한계가 애매, 모호하여 관리공사와 법인간의 책임한계를 서로 미루는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파행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경매가 불가능한 일부품목의 상장예외지정으로 도매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첫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3. 농안법의 개정과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기한 바와 같이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자 농안 법의 개정이 또다시 대두되었다.

특히 농안 법 28조 에 의한 법인수탁의 원칙의 조항 때문에 관행대로 수탁행위를 한 중도매인은 수시로 농안 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아 범법자 아닌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었다.

현행법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규정에 대하여 중도매인들은 또 다른 농안 법개정 투쟁에 들어갔다. 농안 법개정의 요지는 1차 경매된 물건을 재경매하지 않도록 한 것과 중도매인에 의한 수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즉, 상거래 관행을 억지로 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때마침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유통 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 방법을 권장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원회』를 구성 하여 농안 법개정 대책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정부에서는 유통 개혁 대책(안)을 마련하여 1998. 10. 7과 1998.12.2일의 2차에 걸쳐 국회에 농안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수 차례의 논의결과 1999. 12. 16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0. 1. 28일 개정 농안 법이 공포되었다.

이때 개정 농안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도매인제도 도입 (지방도매시장 2000. 6. 1, 중앙도매시장 2004. 1. 1)

둘째, 상장예외품목 관리 강화

셋째, 표준 하역비 제도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 조항에서 도매상체제의 도입이 된 시장도매인 제도의 규정은 도매시장 법인의 강력한 반대와 유통관련 일부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으나 유통단계의 축소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 이상의 유통의 난맥상을 방치하지 않으려는 농 · 수산지역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 중도매들의 간절한 건의 등이 이루어낸 합작품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도 부분적으로나마 도매상체제가 도입됨으로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Ⅳ. 도매상체제의 논점과 비판

농안 법개정으로 시장도매인제가 삽입됨으로써 도매상체제를 도입하는 법률적인 뒷받침은 사실상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부 유통관련 학자와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아직도 도매상체제 도입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도매시장에는 여러 가지 유통환경 여건으로 볼 때 부적합하다는 것이 주요 요점인데 이를 추려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수산물은 多種多樣한 수요를 배경으로 한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하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아주 낮으므로 수산물의 경우 경매 또는 입찰 방법에 의한 판매가 유효하다.[3)]

1) 경매제도의 현실적 부적합성

주지하다시피 경매는 위탁상장된 물건에 대하여 다수의 구매자에 의하여 가격 경쟁을 통한 높은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가 물건을 매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수의 출하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할 때 거래의 투명성이 확실하고 생산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훌륭한 거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도매시장에서는 활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매제도를 실시하지 않다가 2001년에서야 서울의 중앙도매시장에서 패류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경매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과거부터의 상거래 관행이 객주형태의 거래로서 일종의 수탁도매상제도였는바 이러한 유통의 관습이 법률에 의한 강제적 변화가 사실상 어려운 풍토인 것이다.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중도매인 역시 대부분 산지출신으로서 산지에 연고가 있으므

3) 강종호, "경매제도의 필요성", 수산물 유통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p72

로 수탁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과거부터 수탁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과 현실이 괴리되게 만든 커다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경매질서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 경매를 위한 상장제도는 크게 수탁상장 과 매수상장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4)]

① 수탁상장 : 생산자나 출하자가 가격을 경정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방법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며, 그 방법으로는 경매와 수의 매매가 있음

※생산자나 출하자의 입장에서는 위탁상장임

※소유권은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 대금이 지불되기 전까지 생산자나 출하주 소유임

② 매수상장 : 생산자나 출하자가 도매시장 법인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형태

※가격 결정은 2단계로 이루어지며 먼저 매수자(도매법인)가 생산자나 출하자와 교섭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대금을 지불하며, 다음으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과 2차 가격 결정이 이루어짐.

※가격 결정은 보통 수의매매이지만 경매인 경우도 있음

※소유권은 1단계가 종료되면 도매법인으로 이전되며 2단계에서 중도매인에게 판매되면 중도매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수탁상장은 다시 조건부수탁 과 무조건 수탁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무조건 수탁을 가격등의 판매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이고 조건부수탁은 가격등의 판매조건에 대하여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상장의 형태 중 우리 나라 도매시장은 수탁상장 이며 무조건 수탁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것을 보면 상장된 물건이 경매도중에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하자가 즉석에서 불락을 요구하면 그대로 불락처리를 하고 불락품은 곧 유사도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매도중 수시로 불락이 되고 불락품이 경매현장에서 장외거래가 되는 현실을 볼 때 개설자나 도매시장 법인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이 서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불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개설자나 법인은 출하자의 물건이므로 경매 가격이 안 맞으면 경매 도중에 그냥 가져가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한다. 이와 같이 중앙도매시장에서조차 경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개념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상장 경매를 시행해봐야 의미가 없으며 경매에 대한 문제점만 더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강종호, 전게논문, p29

2) 경매 시설 및 여건의 부적합

경매가 실시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몇 가지의 기본조건이 구비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출하물건의 표준화, 규격화, 포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현행 농안 법에 표준 하역비 제도가 도입되면서(농안 법제 40조)이에 대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졌다. 그러나 수산물 보다 더 물류 기능이 앞선 농산물조차 2002년부터 실시하기로 규정되었지만 아직도 실시가 요원하고 수산물은 아직도 표준화, 규격화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준도 없이 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둘째, 법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수탁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기록상장에 의하던 상장경매제도가 2001년도부터 패류부터 실시되었지만 법인에 의한 수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패류를 볼 것 같으면 과거 기록 상장이 중도매인에 의하여 수탁이 이루어 졌으나 경매실시 이후 그 수탁이 산지 유통인 즉 주재하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유통단계만 한 단계 더 높인 격이 되었다. 주재출하주에 의하여 불락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들 불락품의 무단 불법도매 행위로 말미암아 시장 유통질서는 더욱 어지러운 결과만 초래하였다.

셋째, 경매장 시설의 문제이다. 이는 법 시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도매시장인 가락 동 수산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은 경매장이 없어서 주위의 주차장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 경매장 사용이 2년이 넘도록 경매장 건립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는데 따른 보건위생상의 문제, 물건의 이적으로 인한 추가 유통비용 발생, 경매 후 잔품 이적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다.

이러한 임시 경매장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개설자는 경매실시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시 경매장 운영에 안주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임시 경매장의 문제점이 유통상의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향후 신선도와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 식생활에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매장의 시설이 예산 및 장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기에 건립하기가 어렵다면 경매 거래도 건립될 때까지 실시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금 심하게 비유한다면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실탄 없이 총만 들고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3) 가격의 탄력성 문제

수산물은 생산에 있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계획생산이 어려워 수요보다는 공급의 탄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어장의 상황이 좋아서 풍어를 이루면 공급이 풍부하고 태풍 또는 해일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어들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 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수요와 공급의 가격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가격의 탄력성이 수요가격의 탄력성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하여 부식으로 이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있어서 주식은 없어서는 안되지만 부식은 가격이 비싸면 안 사먹으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에 비하여 수산물의 탄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으며 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문제에서도 수요보다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명절에 대비한 소비자들의 일시적인 수요로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이다. 결국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 가격의 탄력성 문제로 (특히 수용의 탄력성)경매가 필요하다는 것음 다소 무리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2. 거대 상업자본에 의하여 투기 및 매점 매석

행위 또는 독과점 행사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다.

도매상제도가 실시되면 자본력이 있는 일부 소수의 도매상에 의하여 수산물의 투기 대상 또는 매점 매석 행위가 이루어지고 영세한 산지 생산자 또는 출하자가 자본에 의하여 지배, 예속되어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1) 농산물과는 달리 수산물은 매점 매석 행위의 대상이 극히 소수이다.

특히 수산물의 특성과 거래 유형이 다른 상품과 크게 달라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점 매석의 대상이 별로 없다.

① 수산물의 특성

※소량 다품종으로 구매력이 대량을 이루어지지 않음.

※냉동 ·냉장의 장기저장이 곤란한 것이 다수임.

※생산 시기와 생산량의 불확실성으로 판매시기와 판매량의 예측이 곤란함.

※계절성 상품으로 대량 생산 및 대량 공급이 곤란함.

② 수산물 거래의 특성

※산지 위판장 에서 1차 거래 됨.

○짓가림제 (일종의 수익분배제)임금 특성상 선원이 양륙 항에서 판매의 특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자함.[5)]

○다액의 출어 경비를 양륙후 즉시 조달하기 위하여 산지 위판장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수산물 하역 체계가 위판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

※ 유통 단계가 복잡함

○산지 생산자이외에 중도매인 및 수집상이 있고 소비지의 수집상과 중도

5) 강연실.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체제의 재편성 방안", 하계 학술 발표회 및 심포지움, 한국 식품유통 학회, 1997, p161

매인, 도매상이 있음.

○소량 다품종이므로 소량의 집하 및 운송이 복잡함.

○규격화와 포장화가 미흡하여 파렛트 유통이곤란.

※ 원양어류 및 수입어류는 일정 창고를 보육한 중간 유통업자를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바로 출하되고 법인은 기록상장과 형식 경매를 함.

이상과 같은 수산물의 특성과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명태, 조기 등 소위 제수, 명절 용품에 한하여 매점 매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수산물 전체 품목을 볼 때 극히 우려 할 사항은 아니며 설령 있다하더라도 공산품에서처럼 독과점 금지 규정 또는 수협 등 공기관을 통한 대량 비축의 방법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일부 상업자본가 또는 도매상에 의하여 매점 매석 또는 독과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감시, 조정, 통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모든 거래형태는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여 시장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수 도매상으로부터의 매점 매석 행위 또는 독과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로 할 것이다.

첫째, 산지 출하 시점에서 공동 출하를 하도록 촉진한다.

이를 테면 농사물 산지의 작목반과 같은 임의 단체, 단위 수협 등을 통하여 출하토록 하여 자본가에게 예속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한다.

수산물이 계절성을 타고 있고 대량 생산 및 계획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대량수요와 공급에 대비하여 비축정책, 소비정책을 세우도록 하여 물가 안정에 대비한다. 현재 수산업계를 보면 생산지는 물론 소비지 역시 정보체계는 거의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산물 관련 종합 정보처리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매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규정하여 자유시장 경쟁 에 의한 도매상체제를 운영하되 그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도매상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매 법인(도매상)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각 도매법인은 자본주의 시장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쟁토록 하여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도매상 체제의 효과적 추진 방안

1. 제 1단계 : 상장예외품목의 점진적 확대

상장예외품목은 농안 법 제 31조 제 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물건을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 반입물량이 소량이거나, 품목의 특성상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매시장 상장제도 아래에서 중도매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도매상체제로서 앞으로 도매시장 거래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수산물은 2001년 4월부터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일찍이 도입한 농산물의 경우를 보면 상장예외품목의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5,표6>

<표5> 연도별 상장예외 지정 품목수 및 거래실적

년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115	147	147	178	162	162	162
상장경매	85	86	86	88	52	49	49
상장예외	30	61	61	90	110	113	113

※연도별 (1995~2000) 청과부류거래방법 지정 품목수
(상장예외확대)

<표6> 연도별 (1995~2000) 농산물 상장예외 거래실적

구분	거 래 물 량 (톤)			거 래 금 액 (백만원)		
	총 물량	상장예외 거래		총 거래금액	상장예외 거래	
		물량	%		금액	%
1995	2,253,220	11,440	0.5	1,484,582	14,828	1.0
1996	2,239,484	32,025	1.4	2,111,186	48,757	2.3
1997	2,473,365	40,846	1.7	2,205,361	58,742	2.6
1998	2,069,352	56,863	2.7	1,723,266	81,902	4.8
1999	2,134,034	91,518	4.3	1,855,836	125,623	6.8
2000	2,134,034	159,883	7.0	1,880,952	179,472	

자료 : 유통인 교육 교재,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2001. p35

이 와 같이 상장예외 품목의 수량과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하여

야 좋을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 농안 법이 상장경매 원칙을 주거래 방법으로 한 결과 경매 방법보다는 상장예외 거래방식이 우리 고유의 상거래 관행 방식에 적합할뿐더러 무엇보다 경매방식에 대하여 자유경쟁 원리에 더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록 상장, 경매에 의존하여 불법수탁자라는 범법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임시 경매장에서 분산키위해 이적비라는 추가유통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매에 비하여 분산시간이 절약되어 물건의 신선도 유지가 용이하고, 무엇보다 물건의 수탁과 분산을 자기 상업적 Know how 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상장예외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여 다가오는 도매상체제를 운영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기준이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사항이므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거대한 첫발을 내딛는 시대적 요구임을 감안할 때 상장예외품목의 제한적인 확대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 아닐수 없다.

2. 제 2 단계 : 업무 규정의 현실적 적합성

1) 도매법인의 설립

농안법에서 정의하는 도매상 법인(시장 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도매상체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상제도는 지방도매시장처럼 법정기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유통의 합리화라 구조개혁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주어진 기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도매상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 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정하여야 할 것 이다.

개설자는 업무 규정사항에 시장도매인의 지정요건,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운전자금, 거래대금에 관한 보증금 등 각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으나 특히 자본금 및 거래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에서 준하는 기본시안과는 별도로 수산물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보아 시장규모가 농산물에 비하여 적고, 자본적으로도 영세하므로 현재의 시장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론에만 치우친 나머지 처음부터 기준을 높게 책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도매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서울의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

에 관한 농림부의 시안을 보고 수산물 도매상체제는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그림의 떡으로만 남을까봐 적지 아니 걱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설령 도매 법인의 기준이 일정 수준의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수산물 거래 현실을 감안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약 3~5년)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 도매상 체제를 실시하여 보고 경과 기간 이후에 일정수준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2003년 3월에 서울의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에 앞서 발표된 농산물 도매 법인의 기준을 참고하면 다름과 같다. <표7>

<표7> 도매법인적정 자본금 및 적정수 기준안

구분	적정자본금	적정수	비고
대규모시장	10억원이상	40개이하	가락시장은 거래규모에서 다른 시장과 차이가 너무 커 별도 검토 필요
중규모시장	7억원이상	20개이하	
소규모시장	5억원이상	15개이하	

자료 :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발제자료, 농림부 시장과, 서울특별시, 2003. P.29

위의 기준안은 비록 농산물에 대한 농림부의 안이 긴 하지만 이러한 기준대로 수산물에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2) 도매법인의 영업범위의 신축성

도매법인은 매수. 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위탁 및 중개수수료의 한도와 거래방법에 대해서는 업무규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제도와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개설자는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매법인의 영업범위 중에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원칙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는데(시행규칙33조)이는 수산물의 특성상(소량다품종)구색 갖추기의 일환으로 일정부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의 법취지는(매수,판매금지)품목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인식이 되지만 수산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전문화 하기 에는 수산물의 품목수가 다양하므로 농산물과 함께 비교하여 똑같이 제한한다는 것은 전체규모에 대비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매법인에 최저거래 금액의 제한이 있는데 이는 자격기준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취지이나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는 제도인만큼 제도가 정착되는 일정기간은 최저거래 금액 제한을 유보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정산창구의 설치

도매법인은 거래대금을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의 위탁상 제도 아래서의 폐혜를 방지하고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매상 체제 아래서의 거래대금을 예시된 대로 1-3일내에 결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매우 동 떨어진 사항이다. 수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냉동. 냉장이 안되는 다수의 품목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외상판매가 전혀 없을 수가 없을진데 불과 며칠사이에 현금 결제를 하라는 것은 여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실정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결제 기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8>

<표8> 도매법인 거래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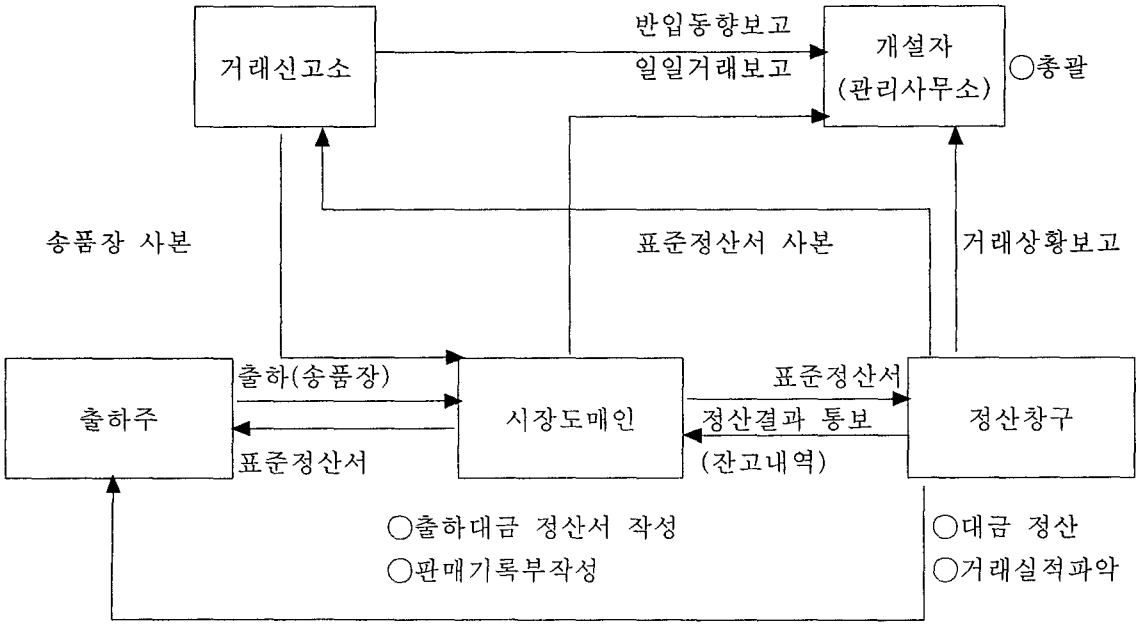

대금 정산(결제) 및 정산서 송부

자료 :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발제자료 ,
농림부 시장과 ,서울특별시, 2003, P31

3. 제 3 단계 : 거래의 공정성 기반 구축

1) 1시장 2거래체제 공존극복

현행 농안법 규정에는 상정 경매체제와 도매상 체제가 함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 거래제도가 공존한다는 것음 출하자 입장에서 볼 때 출하선택권이 많아진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도매시장 관련 주체 당사자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개설자의 입장에서 여하히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관리 공사의 인원이 최소화 할 텐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1개 도매시장 내 에서 도매상체제와 경매 체제가 공존하는 도매시장 역사상 초유의 현상이 벌어질 경우 1시장 2가격이 형성되어 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기 쉽고 보이지 않는 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예상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도매법인 모두가 법질서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준법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개설자의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확실한 관리의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를 관철 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거래질서를 위한 관리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징계를 가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규격화.포장화의 적극추진

우리보다 유통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유럽의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상체제 아래 물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투명거래가 가능하도록 선별. 등급. 포장등 표준화. 규격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시장 종사자들이 신뢰성과 상도의가 높은 수준에 달하여 있으며 가격정보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매상에 의한 규모의 경제화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6)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산지에서부터 선별, 규격포장, 출하물량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하역비 제도에 관련한 표준화 규격부터 신속히 결정하여 산지에서부터 규격화, 표준화 출하가 가능하도록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거래의 대형화와 최소거래단위의 설정

---

6) 정찬길, "도매상제 도입추진에 대한 종합의견",일본.유럽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조의 방문조사 연구, 건국대 농축대학원,1999, P9

일본, 유럽의 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위하여 파렛트 단위 이상의 대형 거래가 정착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 파렛트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판매할 때에도 도,소매상에게 최소거래단위를 정하여 도매시장에서도 최소 규모단위의 소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파렛트화하는 것은 물론 비용을 절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데 그동안 우리의 수산물의 포장화,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앞으로 표준화역비제도를 운영하기에 앞서 수산물 규격, 포장화 단계부터 파렛트 규격에 맞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제 도매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경매거래 방법의 일변도에서 도매상체제라는 새로운 거래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 동안 경과야 어떻든지 간에 도매시장의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무원과 학자들은 그동안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매제도를 고집하면서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2001년부터 지방도매시장에서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도매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개설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개설자의 탓만은 아닐 것이다. 도매상제를 실시하기에는 지방도매시장의 유통 . 종사자들의 영세한 자본력의 문제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곧 다가올 중앙 도매시장에서의 도매상제가 실시될 시점이 와 있다. 지방도매시장에서와 같이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개설자나 유통종사자 모두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유통구조 개선에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유통에 관한한 법과 현실에 괴리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도매상체제는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장예외 거래 방법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며 과거부터 우리 시장의 거래관행이므로 개설자나 도매법인이 조금만 협력하면 정착시키는데 그리 큰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매에 부적합한 수입수산물이 증대되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유통정보체계의 구축도 그 어느 때 보다 용이하게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도매상체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유통 환경의 여건도 그 어느 때 보다 성숙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참고 문헌

농산물 유통개혁, 농림부, 1997
농산물 중도매법인 경영자 과정, 농수산물 유통공사,1599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발제자료, 서울 특별시, 2003
하계 학술발표회 및 심포자움, 한국식품유통학회, 1997
유통경제 현실 및 유통이론적관점, 해양수산부, 1998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식품유통학회, 2002
수산물 유통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도매상제 도입의 타당선 여부조사 건국대 농축대학원, 1999